

## 수업연구회에 관한 규정(3-5-28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수업연구회 운영을 통한 해당 전공 또는 계열에 적합한 교수법 개선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① 본대학교의 모든 학과(전공)를 대상으로 하며, 전임교원 4명이상 또는 2개학과 이상(전임교원 3명이상)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이어야 한다.

② 수업연구회는 주관 부서에서 매 학년도 초에 당해 년도 수업연구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모집하며,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
제3조(운영기간) 수업연구회는 매 학년도를 기준으로 운영된다.

제4조(주관부서 및 임무) 수업연구회의 운영은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수업연구회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
2. 수업연구회 운영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
3. 수업연구회 결과자료 취합 및 보고에 관한 사항
4. 운영비 정산에 관한 사항

제5조(운영원칙) ① 수업연구회 주제 및 내용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.

② 팀별 모임횟수는 운영기간동안 최소 5회이상, 세미나는 1회 이상 개최해야한다.

③ 세미나는 수업연구회 결과에 따른 적용세미나로 1회당 2명 이상이 발표하며 다른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중에 교내에서 개최한다.

④ 세미나 일정은 적어도 2주 전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통보하고, 센터에서는 교내 교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.

⑤ 수업연구회 운영 횟수는 당해연도 계획수립에 따라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정산원칙) ① 수업연구회 운영 최종결과물 제출시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② 예산사용 및 정산지침은 별첨에 따른다.

제7조(운영결과 활용) ① 수업연구회 운영 결과보고를 통해 다양한 학교 정책 운영에 자료로 활용한다.

② 세미나 운영실적 및 참여실적을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